

關稅의 實效保護率에 관한 考察

李 榮 基*

〈目 次〉

I. 實效保護의 概念과 沿革
1. 實效保護의 概念
2. 實效保護概念의 沿革
II. 實效保護率의 表示
1. 假 定
2. 數式的 表示
3. 圖示的 表示
4. 間接稅와 補助金
III. 韓國의 實效保護率
1. 1963年度 產業聯關表에 의한 算出
2. 1966年度 產業聯關表에 의한 算出
3. 1973年度 產業聯關表에 의한 算出
4. 實效保護率의 國內比較
5. 實效保護率의 國際比較

I. 實效保護의 概念과 沿革

1. 實效保護의 概念

關稅의 賦課는 保護效果, 消費抑制效果, 收入效果, 再分配效果, 交易條件效果, 雇傭效果, 國際收支效果 등을 가져온다. 이 경우 保護效果라 함은 關稅의 賦課로 인하여 輸入財의 價格을 높임으로써 輸入財와 競合하는 國內財貨의 生産을 保護하는 效果를 뜻한다.

지금 어떤 輸入商品 1單位의 國際市場價格이 1,000원이라 하고 이 商品은 國內에서도 生産이 可能하다고 한다.

만일 이 商品의 輸入에 20%의 從價關稅가 賦課되었다고 하면 이 商品의 國內價格은 1,200원으로 上昇할 것이며 따라서 國內產品의 價格도 1,200원까지 上昇될 수 있다. 이는 國內生産에 使用되는 生産要素에 대한 報酬가 關稅가 賦課된 만큼 많이 支給됨을 意味한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社會教育科 겸 貿易學科 教授

生産要素에 대한 報酬는 附加價値이므로 保護라 함은 國內生産의 附加價値를 增加시킴을 뜻한다. 따라서 이 경우 20%의 關稅의 賦課는 同率만큼의 國內生産의 附加價値를 增加시키게 되어 關稅率과 國內附加價値의 增加率은 一致하게 된다. 그러나 이 商品이 輸入原料를 使用하고 그 輸入原料에 대하여도 關稅가 賦課되면 關稅率과 國內附加價値의 增加率과는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前記 商品 1單位의 國內生産에 500원의 輸入原料가 使用된다고 하자. 이 경우 이 商品의 附加價値는 1,000원-500원 즉 500원이 된다. 지금 이 商品에 대하여 앞서의 경우와 같이 20%의 關稅가 賦課되었다고 하면 關稅額은 200원이 되며 이 商品의 附加價値는 關稅額만큼 增加될 수 있으므로 當初의 附加價値에 대한 增加率은

$$\frac{200}{500} = 0.4$$

즉 40%가 된다. 이는 20%의 關稅가 40%의 國內附加價値의 增加率을 招來함을 뜻한다.

그러나 500원의 輸入原料에 대하여도 關稅가 賦課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輸入原料의 價格이 높아지므로 國內附加價値는 減少할 수 밖에 없다. 具體的으로 輸入原料에 대하여도 20%의 關稅가 賦課되었다고 하면 國內附加價値는 輸入原料에 대하여 關稅가 賦課되지 않는 경우보다 500원×20% 즉 100원 만큼 減少하여 200원-100원=100원이 되어 그 增加率은

$$\frac{100}{500} = 0.2$$

즉 20%가 된다. 또한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率이 40%이면 國內附加價値의 增加率은 零이 되며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率이 50%이면 國內附加價値의 增加率은 도리어 「마이너스」가 된다.

이와 같이 關稅로 인한 國內産業의 保護의 程度는 名目關稅率뿐만이 아니라 生産의 投入 產出構造와 投入財에 과해지는 關稅의 效果도 아울러 勘案하여 産業의 國內附加價値의 增減率을 算出하여야 하며 關稅의 保護政策에 의하여 招來되는 國內附加價値의 增加率을 實效保護率(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이라 한다. 實效保護率이라는 用語의에 實質保護率이라는 말이 使用되기도 하며 附加價値保護率(rate of protection of value added), 隱蔽된 保護率(implicit rate of protection)이라는 表現도 있다.

따라서 關稅로 인한 保護政策의 實質的 效果는 名目的인 關稅率에 의해서가 아니라 實效保護率에 의하여 測定되어야 한다.

2. 實效保護概念의 沿革

實效保護率의 概念이 關稅를 논함에 있어 使用되고 經濟學者 및 政策當局者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기 시작한 것은 比較的 最近의 일이다. 그러나 中間投入財에 대한 關稅가 이를 原料로 使用하는 產業의 保護效果를 減少시킨다는 事實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認識되어 왔다. 예를 들면, Taussig, F.W., Schüller, R., Haberler, G. 등의 國際貿易論에 관한 文獻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Taussig는 그의 著書 *The Tariff History of the United States*에서 羊毛에 대한 關稅와 羊毛製品에 대한 關稅와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具體的인 數字를 들어 說明하고 있다. 즉 羊毛의 費用은 羊毛製品을 生産하는 費用의 약 半이 되며 따라서 1816年の 경우 羊毛製品에 대한 關稅는 25%, 羊毛에 대한 關稅는 15%이기 때문에 純保護(net protection)는 $25\% - (15\% \times \frac{1}{2}) = 17\frac{1}{2}\%$ 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1824年の 경우 羊毛製品에 대한 關稅는 $33\frac{1}{3}\%$, 羊毛에 대한 關稅는 30%이기 때문에 純保護는 $33\frac{1}{3}\% - (30\% \times \frac{1}{2}) = 18\frac{1}{3}\%$ 가 된다고 하였다.⁽¹⁾

오스트리아의 經濟學者 Schüller는 1905년에 實效保護率에 관하여 算術的 例를 提示하고 있다. 어떤 商品이 얼마만큼의 關稅保護를 받는가를 알기 위하여는 해당 商品의 生産에 使用되는 原料 및 半製品에 賦課되는 關稅도 考慮하여야 한다. 가령 綿織物에 대하여 1「미터」當 100「크로네」의 關稅가 設定되어 있고 그 織物의 生産에 所要되는 綿絲의 關稅가 30「크로네」라고 하면 해당 織物業界의 外國競爭者는 綿絲를 30「크로네」만큼 싸게 購入할 수 있으므로 綿織物生産에 대한 關稅保護는 70「크로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結果가 된다.⁽²⁾

또한 Haberler는 中間投入財에 대한 關稅가 만드시 그 나라의 保護效果를 充分히 達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가령 綿絲에 대한 關稅의 賦課는 그 價格을 上昇시키고 이로 인하여 綿布의 製造業者는 外國과의 競爭力이 弱화되어 生産이 減退될지 모른다. 이러한 경우 綿絲의 輸入은 事實상 減少되겠지만 綿布의 輸入은 米상불 增加할 것이다. 이와 같은 狀態에 있어서는 關稅는 그 본래의 保護의 目的을 充分히 達成할 수는 없다.」⁽³⁾

近年에 이르러 Meade는 輸入 또는 輸出에 대한 課稅 및 補助金의 分析에 있어 實效保護率에 해당하는 것을 數式的 例를 들어 說明하고 있다.⁽⁴⁾

(1) Taussig, F. W., *The Tariff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Capricorn Books, New York, 8th ed., 1964, p. 75.

(2) Schüller, R., *Schutzzoll und Freihandel*, Vienna und Leipzig, 1905, pp. 149-50.

(3) Haberler, W.,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 Hodge & Co., London, 1936, pp. 235-6.

(4) Meade, J.E., *Trade and Welfare*, Oxford Univ. Press, London, 1955, p. 157, pp. 162-3.

그러나 實效保護率의 概念에 대한 最初의 組織의 論議는 1955년에 Barber의 캐나다의 關稅政策에 관한 論文에서 展開되었다. 그는 關稅의 實效水準(effective level of tariff)이라는 用語를 처음으로 使用하고 이는 名目的 關稅率과 달라서 輸入原料가 積하는 比重 및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率 如何에 따라 變化함을 明白히 하였다.⁽⁵⁾ 이어 1957년에 스웨덴의 關稅委員會가 實效保護의 概念에 立脚하여 關稅政策의 改正을 提議하는 報告書(*Revision of the Swedish Customs Tariff*)를 提出한 바 있으며 이는 南美에 많은 影響力을 주어 1964년에 Macario로 하여금 같은 種類의 提案을 하게 한 바 있다.⁽⁶⁾

이상과 같이 實效保護率의 概念은 그 歷史가 상당히 오래 된 것이나 實效保護率이 實際로 測定되고 應用되기 시작한 것은 1960年代의 後半의 일이다. 이는 Leontief의 投入·產出分析의 普及에 의하여 投入·產出構造가 關稅構造의 分野에 應用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各國의 投入·產出表의 測定이 實效保護率의 測定을 可能케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濠洲에서는 Corden 教授의 研究와 業績에 힘입어 많은 進展을 보았다. 濠洲經濟에 대한 Vernon 調查委員은 關稅로 인한 保護의 높이를 實際로 計測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力說하고 이 경우 保護率의 크기는 名目保護率이 아니라 實效保護率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며⁽⁷⁾ 이와 같은 主張은 關稅當局에 의해서도 受諾되었다.

또한 Johnson은 1965년에 實效保護率에 관한 理論的 研究를 發表하였으며⁽⁸⁾ Balassa와 Basevi는 最初로 體系的으로 實效保護率을 測定하는 研究를 實施하였다.⁽⁹⁾ 그리고 Corden 및 Leith는 그들의 論文에서 非貿易財, 代替性 및 換率과의 聯關性 등 複雜한 問題를 解決하고자 試圖하였고 實效保護率을 一般均衡의 경우까지 擴大하여 說明을 가하고 있으며⁽¹⁰⁾

-
- (5) Barber, C.L., "Canadian Tariff Polic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 21, Nov. 1955, pp. 513-30.
- (6) Macario, S., "Protectionism and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Economic Bulletin for Latin America*, Vol. 9, Mar. 1964, pp. 61-101.
- (7) Vernon, J., et al., *Report of the Committee of Economic Enquiry*,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1965, Chapter 13 and Appendix L.
- (8) Johnson, H.G., "The Theory of Tariff Struc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World Trade and Development," Johnson, H.G. and Kenen, P.B., *Trade and Development*, Geneva, 1965.
- (9) Balassa, B., "Tariff Protection in Industrial Countries: An Evalu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3, Dec. 1965, pp. 573-94. Basevi, G., "The United States Tariff Structure: Estimates of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 of United States Industries and Industrial Labo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8, May 1966, pp. 147-60.
- (10) Corden, W.M., "The Structure of a Tariff System and the Effective Protective Ra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4, Jun, 1966, pp. 221-37. Leith, J.C., "Substitution and Supply Elasticities in Calculating the Effective Protective Rat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2, Nov. 1968, pp. 588-601, and "Reply," Vol. 84, Feb. 1970, pp. 158-60.

Corden은 이와같은 여러 경우의 問題를 再檢討하고 整理하여 單行本으로 出版한 바 있다.⁽¹¹⁾ 이와 같은 實效保護率의 概念의 理論的 展開와 併行하여 實效保護率의 實際的인 測定이 美國, EEC諸國,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日本 등을 비롯하여 브라질,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韓國 등 여러 開發途上國에서 實施되고 있으며 그 結果를 關稅政策에 反映시키기 위한 여러 努力이 繼續되고 있다.

이리하여 1960年代 後半이후 많은 學者들에 의하여 實效保護率에 대한 理論的 研究와 實際的 分析이 多角度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實效保護概念을 한층 더 精密化하기 위한 一聯의 作業들이다. 몇가지 예를 들면 1970年 12월에 제네바에서 GATT主催로 斯界의 權威者들이 모여서 實效保護率에 관한 學術會議를 開催하여 당면한 여러 問題點에 관한 眞지한 討論을 展開하여 그 結果를 發表한 바 있으며⁽¹²⁾ 實效保護率의 測定에서 假定되는 生産要素와 投入財間, 또는 投入財 相互間의 嚴密한 非代替性을 撤廢하여 代替性이 認定되는 경우 實際로 實效保護率이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濠洲의 경우를 中心으로 測定한 바 있다.⁽¹³⁾ 또한 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産業構造도 變化하고 따라서 産業聯關表에서의 投入係數가 必然的으로 달라지게 되는 關係上 名目關稅率이 변하지 않더라도 實效保護率은 달라진다. 이와 같이 産業構造의 變化가 實效保護率에 대하여 주는 影響에 대한 分析도 最近에 이루어지고 있다.⁽¹⁴⁾

II. 實效保護率의 表示

1. 假 定

實效保護率을 具體的으로 表示하고 測定하기 위하여는 國際貿易理論에서 一般的으로 適用되는 假定, 예를 들면 國際間的 生産要素의 非移動性, 國內市場의 完全競爭狀態, 충분한 需要의 存在性, 輸送費의 存在는 無視할 수 있다 등의 假定外에 다음과 같은 假定이 必要하다.

(11) Corden, W.M., *The Theory of Protec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71.

(12) Grubel, H.G. and Johnson, H.G., eds., *Effective Tariff Protection*, GATT, Geneva, 1971, pp. 1-15, pp. 269-280.

(13) Sampson, G.P., "Effective Protection and the Substitution Problem: The Australian Case," *Economic Record*, Vol. 51, Jun. 1975, pp. 249-52.

(14) Yeats, A.J.,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Production Process Changes on Effective Protection Estim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8, Feb. 1976, pp. 81-5.

1) 投入係數는 一定하다. 實效保護率의 概念에 있어서는 關稅의 賦課前과 賦課後에 있어서 投入係數는 항상 一定하다고 假定된다. 投入係數一定의 假定은 關稅의 賦課로 인하여 生産要素와 投入財間 또는 投入財相互間의 代替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實效保護의 概念에 있어서는 嚴密한 非代替性이 假定되고 있다.

2) 小國(small country)의 假定. 實效保護率의 概念에서는 最終財 및 投入財의 價格은 關稅가 賦課되는 해당 국가에 있어 一定不變이라 假定된다. 換言하면 最終財 및 投入財의 外國의 供給의 彈力性이 無限大라 假定된다. 이는 關稅를 賦課함으로써 保護政策을 취하는 國家가 世界市場에서 價格支配力, 즉 獨占力을 가지지 못하는 小國이라 假定되기 때문이다.

3) 非貿易財 또는 純國內財는 存在하지 않는다는 假定. 實效保護率의 概念에서는 모든 財貨는 輸入可能財이며 따라서 產出財, 投入財는 전부 外國에서의 輸入이 可能한 財貨라 看做된다. 商業, 金融, 通信, 水道 및 狹義의 서어비스業 등은 事實上 貿易이 不可能한 것이지만 實效保護率의 概念에서는 일단 이들도 貿易이 可能한 것이라 假定하고 있다.

4) 非禁止的 關稅의 假定. 關稅가 賦課된 후 輸入이 零이 되면 3)의 非貿易財는 存在하지 않는다는 假定에 違背된다. 따라서 實效保護率의 概念에서는 關稅는 輸入을 禁止시킬 만큼 높지는 않고 關稅가 賦課된 후에 있어서도 輸入은 當然히 存在한다는 것이 假定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假定은 극히 非現實的이지만 實效保護率의 實際的인 表現에서는 일단 이와 같은 假定 밑에서 出發하였고 實效保護率에 대한 理論이 精密化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와 같은 假定을 除去한 후에 있어서의 表現과 測定을 試圖하고 있다.

2. 數式的 表示

앞서의 여러 假定을 前提로 하여 1產出財, 1投入財로 構成되는 模型을 使用하여 名目關稅率과 實效保護率과의 關係를 提示함으로써 實效保護率이 어떻게 表示되고 測定되는가를 數式을 利用하여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¹⁵⁾

지금

p_0 = 自由貿易時의 j 財(最終財)의 單位當 附加價值

p_0' = 關稅賦課後의 j 財(最終財)의 單位當 附加價值

g_j = j 財의 實效保護率

p_j = 自由貿易時의 j 財의 單位當 價格

(15) Corden, W.M., *The Theory of Protec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71, pp. 35-37.

a_{ij} = 自由貿易時의 價格에 있어서의 j 財單位額에 投入되는 i 財의 額(價值的 投入係數)

a'_{ij} = 關稅賦課後의 價格에 있어서의 j 財單位額에 投入되는 i 財의 額

t_j = j 財의 名目關稅率

t_i = i 財의 名目關稅率

이 라 하면

$$p_v = p_j(1 - a_{ij}) \dots\dots\dots(1)$$

$$p_v' = p_j[(1 + t_j) - a_{ij}(1 + t_i)] \dots\dots\dots(2)$$

$$g_j = \frac{p_v' - p_v}{p_v} \dots\dots\dots(3)$$

(1), (2), (3)으로 부터

$$g_j = \frac{t_j - a_{ij}t_i}{1 - a_{ij}} \dots\dots\dots(4)$$

또는

$$g_j = \frac{t_j}{1 - a_{ij}} - \frac{a_{ij}t_i}{1 - a_{ij}} \dots\dots\dots(4.1)$$

$$g_j = t_j + \frac{a_{ij}(t_j - t_i)}{1 - a_{ij}} \dots\dots\dots(4.2)$$

$$t_j = (1 - a_{ij})g_j + a_{ij}t_i \dots\dots\dots(4.3)$$

이 라 表示된다.

前記 (4)式으로부터 j 財의 名目關稅率(t_j)과 實效保護率(g_j)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만일 產出財(j 財)와 投入財(i 財)에 課해지는 關稅率이 같으면 實效保護率은 名目關稅率과 같다. 換言하면

$$t_j = t_i \text{ 이면 } g_j = t_j$$

2) j 財에 課해지는 關稅率이 i 財에 課해지는 關稅率보다 높으면 實效保護率이 名目關稅率보다 높다.

$$t_j > t_i \text{ 이면 } g_j > t_j$$

3) j 財에 課해지는 關稅率이 i 財에 課해지는 關稅率보다 낮으면 實效保護率이 名目關稅率보다 낮다.

$$t_j < t_i \text{ 이면 } g_j < t_j$$

4) i 財의 關稅率이 j 財의 關稅率보다 어느 程度 超越하여 크다고 하면 實效保護率은 「 g_j

이너스]가 된다.

$$t_j < a_{ij} t_i \text{ 이면 } g_j < 0$$

5) j 財에 대해서는 關稅가 賦課되지 않고 i 財만 關稅가 賦課되면 $1 > a_{ij} > 0$ 이므로 實效保護率은 「마이너스」가 된다.

$$t_j = 0 \text{ 이면 } g_j = - \left(t_i \frac{a_{ij}}{1 - a_{ij}} \right)$$

6) 反對로 j 財에 대하여 關稅가 賦課되고, i 財에는 關稅가 賦課되지 않는다면 實效保護率은 「플러스」가 된다.

$$t_i = 0 \text{ 이면 } g_j = \frac{t_j}{1 - a_{ij}}$$

7) j 財의 關稅率이 上昇하면 實效保護率은 上昇한다.

$$\frac{\partial g_j}{\partial t_j} = \frac{1}{1 - a_{ij}} > 0$$

8) i 財의 關稅率이 上昇하면 實效保護率은 낮아진다.

$$\frac{\partial g_j}{\partial t_i} = \frac{-a_{ij}}{1 - a_{ij}} < 0$$

9) j 財의 生産에 있어 必要로 되는 i 財의 投入이 減少하는 경우

$$\frac{\partial g_j}{\partial a_{ij}} = \frac{t_j - t_i}{(1 - a_{ij})^2}$$

인고로 $t_j > t_i$ 인 경우 $\frac{\partial g_j}{\partial a_{ij}} > 0$ 이 되어 實效保護率은 上昇한다.

5)는 最終財에 關稅가 賦課되지 않고 投入財에만 關稅가 賦課되면 實效保護率은 「마이너스」가 되고 6)은 反對로 投入財에 關稅가 賦課되지 않고 最終財에 關稅가 賦課되면 實效保護率은 「플러스」가 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즉 6)에서 볼 수 있듯이 最終財에 대한 關稅는 그 産業의 國內生産을 保護하는 補助金の 役割을 하지만 5)에서 볼 수 있듯이 輸入可能投入財에 대한 關稅는 이를 使用하는 産業에 대하여 保護의 程度를 弱화시켜 말하자면 租稅의 役割을 한다. 이와 같이 關稅는 그것이 最終財인 產出物에 科해지느냐 또는 投入財에 대하여 科해지느냐에 따라 補助金の인 役割을 하기도 하고 租稅的인 役割을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保護化와 非保護化의 두 개의 相反된 役割을 하는데 이를 明示한 것이 實效保

護率의 큰 功績이라 할 수 있다. 7)과 8)은 關稅의 保護化와 非保護化의 效果를 각기 變形率의 形態로 表示한 것으로 이들의 效果는 投入係數가 클수록 크다.

이상에서 實效保護率에 대한 1)에서부터 9)까지의 性質을 簡略하게 究明하였지만 이는 投入財가 단지 하나 밖에 없다는 前提下에서의 이야기다. 따라서 이와 같은 性質은 상당히 制約的인 性質이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投入되는 財貨의 數를 增加시켜도 前記의 性質은 전부 充足된다.

지금 投入되는 中間財를 n 個라 하면 이 경우의 實效保護率은

$$g_j = \frac{t_j - \sum_{i=1}^n a_{ij}t_i}{1 - \sum_{i=1}^n a_{ij}} \dots\dots\dots(5)$$

라 表示된다.

그런데 (5)式에서의 投入係數 a_{ij} 는 自由貿易時의 것, 즉 世界價格表示이기 때문에 이를 國內價格表示의 投入係數 a'_{ij} 로 代替시켜야 한다.

$$a'_{ij} = \frac{1+t_i}{1+t_j} a_{ij} \dots\dots\dots(6)$$

(5)와 (6)으로 부터

$$g_j = \frac{\frac{t_j}{1+t_j} - \sum_{i=1}^n \frac{a'_{ij}t_i}{1+t_i}}{\frac{1}{1+t_j} - \sum_{i=1}^n \frac{a'_{ij}}{1+t_i}} \dots\dots\dots(7)$$

또는

$$g_i = \frac{1 - \sum_{i=1}^n a'_{ij}}{\frac{1}{1+t_j} - \sum_{i=1}^n \frac{a'_{ij}}{1+t_i}} - 1 \dots\dots\dots(7.1)$$

3. 圖示의 表示

앞서 名目關稅率과 實效保護率의 關係를 數式을 利用하여 說明한 바 있는데 이를 圖示를 利用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이 경우 앞서의 數式的 表示에서의 諸般 假定은 그대로 適用된 은 물론이다. 實效保護率은 關稅의 賦課로 인하여 發生하는 國內附加價値의 變化率이라 定

OG에서 OG'로, Y財의 國內價格이 OH에서 OH'로 자기 增加되었다고 하자. 假定에 의하여 OG=OH=1인 까닭에 關稅에 의한 國內價格의 增加分은 그대로 關稅率을 表示한다. 따라서

$$X財의 關稅率 t_x = GG'$$

$$Y財의 關稅率 t_y = HH'$$

이다.

다음에 關稅가 없는 경우와 같이 OA의 延長線과 G'점에서의 下方으로의 垂直線이 交叉되는 점을 A'라 하고 線分 OA'를 긋고 다시 H'점에서 OA'에 平行한 線分 H'V'를 긋는다. 이리하여 OAVH보다 外廓이 넓어진 平行四邊形 OA'V'H'를 그릴 수 있다. 이 平行四邊形 OA'V'H'의 V'G'는

$$OH' - G'A' = V'A' - G'A' = V'G'$$

이므로 이는 關稅의 賦課로 인하여 增加한 Y財生産의 附加價値이다. 實效保護率은 關稅로 인하여 發生한 國內生産의 附加價値의 變化率이다. 따라서

$$Y財의 實效保護率 g_y = \frac{V'G' - VG}{VG}$$

이다. 그런데 그림에서 GG'=HH'로 되어 있다. 이는 X財의 關稅率과 Y財의 關稅率이 같은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닮음三角形의 法則에 따라

$$\frac{V'G' - VG}{VG} = \frac{VV'}{OV} = HH'$$

라는 結果를 얻는다. 이는 Y財의 關稅率이 X財의 關稅率과 같은 경우는 Y財의 實效保護率은 Y財의 關稅率과 같음을 意味한다. 즉 앞서의 數式的 表示에서의 1), 즉

$$t_j = t_i \text{ 이면 } g_j = t_j$$

을 뜻한다.

둘째로 그림에서 GG' < HH', 즉 Y財의 關稅率이 X財의 關稅率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면 Y財의 實效保護率은

$$g_y = \frac{V''G' - VG}{VG}$$

로 되고 따라서

$$\frac{V''G' - VG}{VG} = \frac{VW''}{OV} = HJ'' > HH''$$

라는 結果를 얻는다. 이는 Y財의 關稅率이 X財의 關稅率보다 큰 경우는 Y財의 實效保護率은 Y財의 關稅率보다 크다고 하는 事實을 表示한다. 이는 前記의 數式的 表示의 2), 즉

$$t_j > t_i \text{ 이면 } g_j > t_j$$

를 意味한다.

세째로, 그림에서 $GG' > HH'''$, 즉 Y財의 關稅率이 X財의 關稅率보다 적은 경우 Y財의 實效保護率은

$$g_j = \frac{V'''G' - VG}{VG} = \frac{VW'''}{OV} = HJ''' < HH'''$$

이 된다. 이는 Y財의 關稅率이 X財의 關稅率보다 적은 경우는 Y財의 實效保護率은 Y財의 關稅率보다 적음을 뜻하며, 이는 前記의 數式的 表示의 3), 즉

$$t_j < t_i \text{ 이면 } g_j < t_j$$

를 意味한다.

네째로, 그림에서 $GG' \cdot GA/OG = HH''''$, 즉 Y財의 關稅率이 X財의 關稅率에다 X財의 Y財에 대한 投入係數를 곱한 것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 三角形 $OG'A'$ 와 三角形 $V''''J''''H''''$ 는 닮음三角形인 까닭에 VV'''' 는 橫軸에 平行된 線分이 되며 따라서 Y財의 實效保護率은

$$g_j = \frac{V''''G' - VG}{VG} = 0$$

이 된다. 이러한 結果로 부터 Y財의 關稅率이 X財의 關稅率에 X財의 Y財에 대한 投入係數를 곱한 것 보다 작은 경우는 VV'''' 에 해당하는 線分은 右下向의 線分이 되며, 따라서 Y財의 實效保護率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는 前記의 數式的 表示의 4), 즉

$$t_j < a_{ij}t_i \text{ 이면 } g_j < 0$$

을 意味한다.

名目關稅率과 實效保護率에 관한 이상과 같은 圖示的 說明은 X財가 Y財의 生産에 投入

될 뿐만 아니라 Y財가 X財의 生産에 投入되는 相互投入財모델로 擴張하여 說明할 수도 있다.

4. 間接稅와 補助金

앞에서의 實效保護率의 表示에 있어서는 名目關稅率과 投入係數만이 考慮되었다. 그러나 實效保護率을 表示하고 測定함에 있어서는 名目關稅率과 投入係數뿐만이 아니라 國內生産 補助金과 國內間接稅(物品稅)도 考慮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補助金과 間接稅는 最終財와 中間投入財의 雙方에 대하여 適用시켜야 한다.

最終財에 대한 國內生産補助金은 保護效果라는 觀點에서는 關稅와 똑같은 役割을 하며, 따라서 生産補助金만큼 國內生産의 附加價値를 높인다. 그러나 最終財에 대한 國內間接稅는 假定에 의하여 最終財의 國際價格은 一定하므로 國內生産의 附加價値에는 影響을 주지 않는다. 다음에 輸入可能投入財에 대한 國內間接稅는 關稅와 같은 役割을 하며 國內生産의 附加價値를 低下시킨다. 그러나 輸入可能投入財에 대한 國內生産補助金은 假定에 의하여 輸入投入財의 價格은 一定하므로 最終財의 國內生産의 附加價値에는 하등의 影響도 주지 않는다. 요컨대 最終財에는 國內生産補助金이 賦與되고, 投入財에는 國內間接稅가 賦課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이는 모두 最終財 및 投入財에 대한 關稅와 같은 效果를 가진다.

따라서 最終財의 國內附加價値의 增加는

$$p_v' = p_j \{ (1+t_j)(1+s_j) - \sum_i a_{ij}(1+t_i)(1+c_i) \} \dots\dots\dots(8)$$

단 $s_j = j$ 財에 대한 國內生産補助金率

$c_j = j$ 財에 대한 國內間接稅率

$c_i = i$ 財에 대한 國內間接稅率

그러므로 國內生産補助金 및 國內間接稅를 勘案한 경우의 實效保護率은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g_j = \frac{p_v' - p_v}{p_v} = \frac{t_j + s_j(1+t_j) - \sum_i a_{ij}[t_i + c_i(1+t_i)]}{1 - \sum_i a_{ij}} \dots\dots\dots(9)$$

그런데 c_i 는 i 財의 國內價格을, c_j 는 j 財의 國內價格을 上昇시키는 效果를 갖기 때문에 앞서 (6)에서 본 바와 같이 世界價格表示의 投入係數 a_{ij} 와 國內價格表示 投入係數 a'_{ij}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있다.

$$a'_{ij} = a_{ij} \frac{(1+t_i)(1+c_i)}{(1+t_j)(1+c_j)} \dots \dots \dots (10)$$

(9)와 (10)으로 부터

$$g_j = \frac{\frac{1+s_j}{1+c_j} - \sum_i a'_{ij}}{\frac{1}{(1+t_j)(1+c_j)} - \sum_i \frac{a'_{ij}}{(1+t_i)(1+c_i)}} - 1 \dots \dots \dots (11)$$

라 表示되며⁽¹⁷⁾, 本稿에서의 韓國의 實效保護率 計算에 있어서는 이 數式을 利用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가지 附記하여야 할 것은 實效保護率을 計測함에 있어 間接稅를 包含 시켜야 한다는 것을 最初로 主張하고 그 計算方法을 體系의으로 展開시킨 것은 Grubel 및 Johnson에 의해서이다. 이 두 教授는 1967年の 論文에서 關稅 및 間接稅를 勘案하여 實效 保護率을 算出하는 方法을 提示함과 아울러 실제로 EEC諸國의 實效保護率을 이 方法에 따 라 測定 發表한 바 있다.⁽¹⁸⁾ 그리고 Grubel, Johnson 및 Rapp는 다시 前記 論文에 약간의 修正을 가하여

$$g_j = \frac{\frac{S''_j}{1+c_j} - \sum_i M'_{ij}}{\frac{S''_j}{(1+t_j)(1+c_j)} - \sum_i \frac{M'_{ij}}{(1+t_i)(1+c_i)}} - 1$$

단 S''_j = 保護貿易下에서의 j 産業의 產出額

M'_{ij} = 保護貿易下에서의 i 産業으로 부터 j 産業으로의 投入額

라 表示한 바 있다.⁽¹⁹⁾

이는 本稿에서 利用되고 있는 바 前記 Corden의 表示方法과 生産補助金을 具體的으로 明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除外하면 本質的으로 다른 바 없다.

(17) Corden, W.M., *op. cit.*, pp. 41-2.

(18) Grubel, H.G. and Johnson, H.G., "Nominal Tariffs, Indirect Taxes and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The Common Market Countries 1959," *Economic Journal*, Vol. 77, Dec. 1967, pp. 761-76. Johnson, H.G., *Aspects of the Theory of Tariffs*,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71, p. 338.

(19) Grubel, H.G., Johnson, H.G. and Rapp, W.V., "Excise Taxes and Effective Protection: A Note", *Economic Journal*, Vol. 79, Sep. 1969, pp. 674-75.

III. 韓國의 實效保護率

우리나라의 實效保護率에 대하여는 1963年度の 産業聯關表를 利用한 試算 및 1966年度の 産業聯關表를 利用한 算出이 있으며 本稿에서는 最近의 1973年度の 産業聯關表를 利用한 計算을 해보았다. 다음에 이들 內容에 대하여 간단히 說明하고 實效保護率에 대한 國內 및 國際比較를 制限된 資料에서나마 試圖하기로 한다.

1. 1963年度 産業聯關表에 의한 算出

日本人 高木量氏は 1967년에 韓國과 日本의 關稅體系를 比較하기 위한 手段으로 1963年度 産業聯關表를 利用하여 우리나라의 實效保護率을 名目關稅率만을 가지고, 즉 앞서의 實效保護率表現方法의 (7)에 의하여 算出한 바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²⁰⁾ 그리고 이 경우 關稅率은 關稅收入을 輸入額으로 나누어 計算하고 있다.

이 計算은 43部門統合産業 중 서서비스業을 除外한 32個品目を 對象으로 하고 있는데 名目關稅率과 比較하여 實效保護率이 낮은 것은 14個品目으로서 그 代表的인 것은 織物(實效保護率 -25.6%, 名目關稅率 3.8%), 輸送用機械(-6.8%, 1%), 纖維製品(-0.5%, 5.8%) 등이다. 이들은 그 製品의 投入財에 高率의 關稅가 賦課됨으로써 實效保護率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다. 즉 그 製品에 대하여 關稅가 賦課되어 있어 保護되고 있는 것 같지만 關稅構造의 內面을 살펴보면 實際로는 保護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가령 織物에 대하여는 主要한 投入財인 纖維絲에 17.3%의 높은 關稅가 賦課되고 있는 반면에 織物自體의 關稅는 3.8%에 불과하므로 이 部門에 대한 實質的인 保護率은 「마이너스」로 되고 있다. 또한 名目關稅率과 比較하여 實效保護率이 높은 것은 18個品目으로 특히 顯著한 品目は 石炭石油製品(實效保護率 67.5%, 名目關稅率 14.1%), 印刷出版(205.3%, 97.7%)이다. 이들 品目에 대하여는 名目關稅率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實質的으로 많은 保護를 받고 있다 할 수 있다. 가령 石炭石油製品에 대하여는 그 製品에 대하여 14%의 關稅가 賦課되고 있지만 그 主要한 投入財인 石炭에 대하여 關稅가 賦課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實效保護率은 名目關稅率에 비하여 대단히 높게 되어 있다.

韓國開發協會는 1967년에 韓國銀行과 Rapp, W.V. 教授등의 協力を 얻어 1963年度 産業聯關表를 바탕으로 間接稅의 影響까지도 考慮하여 우리나라의 實效保護率을 算出한 바 있다.⁽²¹⁾

(20) 高木量, 「日本と韓國の關稅體系の比較」, 『アジア經濟』, 第8卷 第11號, 1967年 11月, pp. 15-26.

(21) Korean Development Association, *Effective Protective Rate of Korean Industries*, 1967, pp. 11-27.

<表 1>

韓國의 實效保護率 (1963)

單位：%

產 業 部 門	名 目 關 稅 率	實 效 保 護 率
1. 米 麥 類	2.9	2.4
2. 其 他 農 產 品	6.0	6.3
3. 林 業	6.7	6.3
4. 漁 業	0	-3.2
5. 石 炭	0	-2.3
6. 其 他 礦 物	5.1	4.0
7. 加 工 食 料 品	6.1	9.7
8. 飲 料 及 煙 草	0.7	-4.7
9. 織 維 絲	17.3	31.2
10. 織 物	3.8	-25.6
11. 織 維 製 品	5.8	-0.5
12. 製 材 合 板	10.1	11.4
13. 木 製 品 家 具	8.1	8.0
14. 紙 類 及 紙 製 品	16.9	23.7
15. 印 刷 及 出 版	97.7	205.3
16. 製 革 及 革 製 品	5.8	2.5
17. 立 平 製 品	8.2	9.7
18. 基 礎 化 學 製 品	15.1	21.9
19. 中 間 化 學 製 品	12.3	18.6
20. 最 終 化 學 製 品	9.5	9.5
21. 化 學 肥 料	5.5	6.9
22. 石 炭 石 油 製 品	14.1	67.5
23. 시멘트	4.5	4.1
24. 窯 業 及 土 石 製 品	11.1	16.7
25. 銑 鐵 及 製 鋼	7.1	14.0
26. 鐵 鋼 1 次 製 品	3.8	1.9
27. 非 鐵 金 屬 1 次 製 品	14.7	27.8
28. 金 屬 2 次 製 品	9.1	13.0
29. 一 般 機 械	4.1	3.5
30. 電 氣 機 械	8.4	5.6
31. 輸 送 用 機 械	1.0	-6.8
32. 其 他 製 造 業	20.2	33.4
單 純 平 均	7.7	16.4

資料：『아시아經濟』, 1967年 11月號

그러나 그 方法에는 異論의 餘地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韓國開發協會의 算出結果가 있다는 事實만을 附記해 둔다.

2. 1966年度 產業聯關表에 의한 算出

韓國貿易研究所는 1969년에 『現行關稅率에 관한 研究』에서 1966年度 産業聯關表를 利用하여 우리나라의 實效保護率을 發表한 바 있다. 韓國貿易研究所의 計算은 Grubel 및 Johnson의 論文에서 提示된 方法을 利用하여 名目關稅率 및 間接稅의 效果를 勘案하였으며 43統合部門中 23個의 製造業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²²⁾ 그 結果는 <表 2>와 같으며 實效保護率이 「마이너스」인 品目이 全體의 半이 넘는 12個品目に 달하고 있다. 또한 名目關稅率의 單純平均은 9.0%인데 實效保護率의 그것은 0.8%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1966年度の 關稅 및 間接稅構造가 平均적으로 볼 때 最終生産物에 대한 保護가 投入物에 대한 關稅 및 間接稅의 生産費引上效果에 미달되어 最終生産物에 대한 참다운 保護가 이룩되고 있지 않음을 뜻하

<表 2> 韓國의 實效保護率 (1966) 單位: %

產 業 部 門	名目關稅率	間 接 稅 率	實效保護率
1. 織 維 絲	1.8	7.5	-31.6
2. 織 物	2.4	0.8	-19.5
3. 織 維 製 品	5.3	0.4	0.1
4. 製 材 및 合 板	10.1	1.4	26.1
5. 木 製 品 및 家 具	1.4	0.9	-18.8
6. 紙 類 및 紙 製 品	8.0	1.8	-1.6
7. 印 刷 出 版	9.3	0.7	1.1
8. 製 革 및 製 品	6.1	0.7	-3.0
9. 工 具 製 品	6.4	0.6	-14.7
10. 基 礎 化 學 製 品	28.3	2.8	53.4
11. 其 他 化 學 製 品	20.1	3.9	9.7
12. 化 學 肥 料	0.0	0.5	-13.3
13. 石 油 製 品	9.4	25.9	9.6
14. 石 炭 製 品	12.7	0.6	+15.7
15. 유 리 토 석 製 品	5.4	2.7	-9.5
16. 銑 鐵 및 製 鋼	9.0	0.6	10.7
17. 鐵 鋼 1 次 製 品	9.9	0.6	-15.4
18. 非 金 屬 地 金	12.5	1.5	14.5
19. 金 屬 2 次 製 品	7.6	0.6	-6.5
20. 一 般 機 械	4.0	0.7	-7.6
21. 電 氣 機 械	12.4	2.1	7.8
22. 輸 送 用 機 械	5.8	1.8	-7.1
23. 其 他 製 造 業	18.3	1.2	18.7
單 純 平 均	9.0	2.6	0.8

資料: 韓國貿易研究所, 『現行關稅率에 관한 研究』, 1969.

(22) 韓國貿易研究所, 『現行關稅率에 관한 研究』, 1969, pp. 63-97.

고 있다. 各品目別의 內容에 대하여는 1973年度의 計算結果와 對比할 때 詳論하기로 한다.

3. 1973年度 產業聯關表에 의한 算出

本稿에서는 最近의 1973年度 產業聯關表를 利用하여 56統合部門과 153基本部門中 必要한 部門에 대하여 實效保護率을 計算하였다. 間接稅를 包含시켜 Corden의 方法을 適用하였는데 이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Grubel 및 Johnson의 方法과 本質的으로 다른 바 없으며 計算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考慮되었다.

1) 實效保護率 概念에서의 假定은 그대로 認定하였다. 따라서 投入財 相互間의 嚴密한 非代替性의 存在, 最終財 및 投入財에 대한 外國의 供給은 無限大이며 따라서 그 國際價格은 一定하다는 것, 또한 非貿易財는 存在하지 않는다 라는 事實 등이 假定되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편의상 建設, 電氣, 水道 및 衛生事業, 鐵道 및 運輸事業, 기타 狹義의 서비스業 등의 非貿易財를 輸入可能財라 看做하고 實效保護率을 算出하였다.

2) 產業部門別의 名目關稅率은 關稅收入을 輸入額으로 나누어 計算하였다. 즉 輸入額으로 加重시킨 加重平均關稅率을 名目關稅率로 보았는데 이는 輸入量이 많은 品目的 關稅率에 가까운 數值가 나올 수 있지만 이 方法은 高率關稅의 輸入抑制效果를 無視하고 있기 때문에 過少評價의 傾向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貿易政策上 減稅 또는 免稅되는 品目도 많으므로 더욱 이러한 傾向이 濃厚하다.

따라서 實行關稅率表의 品目を 產業聯關表上의 產業部門으로 再分類하여 각기의 產業部門에 대한 單純平均關稅率을 名目關稅率로 하여 實效保護率을 算出하는 作業이 併行되어야 하겠지만 本稿에서는 이를 試圖하지 못하였다.

3) 補助金, 輸出金融, 國內「유잔스」등과 같은 것은 실제로 貿易上의 保護에 대하여 影響을 주는 것이지만 資料가 충분치 못하므로 이를 除外시켰다. 本稿에서 適用한 Corden의 方法은 前述한 바와 같이

$$g_j = \frac{\frac{1+s_j}{1+t_j} - \sum_i a'_{ij}}{\frac{1}{(1+t_j)(1+c_j)} - \sum_i \frac{a'_{ij}}{(1+t_i)(1+c_i)}} - 1$$

이기 때문에 應당 補助金(S_j)을 導入하여 實效保護率을 計算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73年度 產業聯關表에 補助金이 計上되어 있는 것은 340調整作業部門중 겨우 3個部門에 지나지 않으며 그 額數도 극히 微微하기 때문에 本稿의 計算에서는 補助金을 일단 除外시켰다.

따라서 本稿에서 適用한 Corden의 方式은 실제로는

$$g_j = \frac{\frac{1}{1+t_j} - \sum_i a'_{ij}}{\frac{1}{(1+t_j)(1+c_j)} - \sum_i \frac{a'_{ij}}{(1+t_i)(1+c_i)}} - 1$$

이 되는 셈이다.

4) 間接稅率은 産業聯關表의 總投入額에서 間接稅를 控除한 것에 대한 間接稅의 比率을 適用하였다. 이 경우 産業聯關表에는 間接稅의 單獨項目은 없고 間接稅-補助金이라는 項目이 있을 뿐이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補助金은 무시할 수 있을 程度이므로 間接稅-補助金을 그대로 間接稅라 看做하여 計算하였다.

이상의 여러 事實을 前提로 1973年度의 産業聯關表에 의하여 計算된 56總合部門의 實效 保護率은 <表3>과 같다. 56個部門中 關稅가 賦課되지 않고 있는 建築, 土木, 電力, 水道

<表3> 韓國의 實效保護率 (1973) 單位: %

產 業 部 門	名目關稅率	間 接 稅 率	實 效 保 護 率
1. 米 麥 類	1.9	0.3	2.3
2. 果 菜 및 其 他 의 穀 物	3.1	0.2	2.8
3. 工 藝 作 物	1.8	5.2	0.7
4. 畜 產 및 養 蠶 物	4.8	0.0	1.2
5. 林 產 物	2.1	0.1	1.8
6. 水 產 物	10.2	0.1	10.1
7. 石 炭	0.6	0.5	-2.4
8. 金 屬 鑛 石	2.0	0.5	-1.4
9. 非 金 屬 鑛 石	1.3	0.5	-0.9
10. 屠 殺 酪 農 科 일 加 工	4.6	0.7	0.3
11. 水 產 加 工	0.3	0.5	-22.0
12. 搗 精 및 製 粉	0.1	-9.9	-8.4
13. 其 他 食 料 品	11.2	3.4	40.6
14. 飲 料 品	48.3	30.5	333.7
15. 煙 草	83.4	60.9	346.3
16. 織 維 絲	1.6	3.5	-10.7
17. 織 物	0.4	0.8	-13.9
18. 織 維 製 品	1.8	0.5	-3.6
19. 製 革 및 革 製 品	1.6	1.4	-7.4
20. 製 材 및 合 板	0.5	1.4	-5.2
21. 木 製 品 및 木 製 家 具	10.0	2.8	27.3
22. 紙 類 및 紙 製 品	7.7	1.7	4.1
23. 印 刷 出 版	4.2	0.2	-2.5
24. 無 機 基 礎 化 學 製 品	15.2	2.5	24.2
25. 有 機 基 礎 化 學 製 品	11.0	3.3	0.8

26. 化 學 肥 料	0.3	-0.1	-16.6
27. 醫 藥 品 및 化 粧 品	28.1	0.8	70.6
28. 其 他 化 學 製 品	10.2	1.6	6.1
29. 石 油 製 品	13.0	19.9	84.5
30. 石 炭 製 品	7.1	0.5	29.5
31. 古 布 製 品	19.0	0.5	117.8
32. 非 金 屬 鑛 物 製 品	16.3	2.4	29.4
33. 鉄 鐵 및 粗 鋼	2.0	0.5	-2.8
34. 鐵 鋼 1 次 製 品	5.5	0.8	8.6
35. 非 鐵 金 屬 地 金 및 同 1 次 製 品	7.9	1.8	10.3
36. 金 屬 製 品	11.2	0.6	24.9
37. 一 般 機 械	3.8	2.9	-4.1
38. 電 氣 機 械	3.6	3.4	-6.0
39. 輸 送 用 機 械	5.3	4.8	-2.4
40. 精 密 機 械 및 光 學 機 具	12.8	1.2	17.0
41. 其 他 製 造 業	2.7	1.1	-5.4
單 純 平 均	6.0	1.6	7.4

註: 單純平均은 飲料品과 煙草를 除外한 것

및 기타 서어비스業 등을 除外한 41個部門에 관하여 보면 「마이너스」의 實效保護率을 나타내고 있는 部門은 17個部門으로서 1966年度의 경우 23個部門中에서 12個部門이 「마이너스」이었던 점과 比較하면 關稅 및 間接稅構造가 最終生産物을 保護하는 方向으로 轉換되고 있음을 示唆해 준다. 또한 1973년에는 實效保護率의 單純平均이 名目關稅率의 그것을 약간 上廻함으로써 더욱 그러함을 보여주고 있다.

4. 實效保護率의 國內比較

우리나라에서 試圖된 바 이상 네 가지의 實效保護率을 比較 檢討한다는 것은 그 간의 經濟의 高度成長으로 각기 使用된 産業聯關表의 內容이 달라졌고 適用된 計算方法이 또한 다르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意義도 別반 重要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1966年의 實效保護率과 1973年의 그것은 算出方法이 類似하기 때문에 66年의 43總合部門中에서의 製造業部門의 實效保護率을 73年과 對比하여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部門에 대하여 그 內容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産業聯關表의 總合部門이 66年의 43個에서 73年의 53個로 增加하였고 그 名稱도 약간 달라진 것이 있는 바 이는 73年의 名稱을 따르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66年의 유리土石製品은 73년에는 非金屬鑛物製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名稱을 使用하기로 한다.

1) 纖維絲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66년의 -31.6%에서 73년에는 -10.7%로 상당히 好轉되었다. 이는 間接稅率이 7.5%에서 3.5%로 引下됨과 아울러 投入중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工業作物, 畜產 및 養蠶, 其他化學製品의 名目關稅率이 66년에 비하여 많이 引下된 點이다. 기타 化學製品의 경우 名目關稅率은 66년의 20.1%에서 10.2%로 引下되었으며 間接稅率도 3.9%에서 1.6%로 引下되었다. 纖維絲가 中間投入財로 많이 使用되고 있는 點을 勘案하면 매우 多幸한 일이다. 그러나 實效保護率이 아직도 -10.7%이므로 政策當局의 保護가 必要하다.

2) 織 物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66년의 -19.5%에서 73년의 -13.9%로 약간 好轉되었다. 이는 名目關稅率이 2.4%에서 0.4%로 下落하였지만 이 部門에 대한 中間投入의 約 半을 차지하는 纖維絲의 名目關稅率이 1.8%에서 1.6%로, 間接稅率이 7.5%에서 3.5%로 引下된데다가 또한 中間投入財중에서 많은 比重을 차지하는 其他化學製品의 關稅率이 20.1%에서 10.2%로 대폭 引下되었기 때문이다.

3) 纖維製品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66년의 0.1%에서 -3.6%로 惡化되었다. 이는 이 部門의 中間投入財중 큰 比重을 차지하는 纖維絲 및 織物의 關稅率이 각기 1.8%에서 1.6%로, 2.4%에서 0.4%로 下落하였지만 이 部門自體에 대한 關稅率이 5.3%에서 1.8%로 그 下落幅이 크기 때문이다.

4) 製革 및 革製品

이 部門은 名目關稅率이 6.1%에서 1.6%로 下落한데다가 間接稅率이 0.7%에서 1.4%로 倍로 引上되었기 때문에 實效保護率이 66년의 -3.0%에서 -7.4%로 惡化되었다. 이 部門의 輸出의 增大를 위하여 實效保護率이 現水準보다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製材 및 合板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66년의 26.1%에서 73년에는 -5.2%로 대폭 下落하였다. 이는 名目關稅率이 10.1%에서 0.5%로 역시 대폭 下落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이 部門의 中間投入財의 半以上을 차지하는 林產物의 關稅率이 0%에서 2.1%로 上昇한 點이다. 이와 같이 實效保護率이 下落하였기 때문에 合板部門의 輸出이 종전보다 活潑하지 못한 原因이 되고 있다.

6) 木製品 및 家具

이 部門은 間接稅率이 0.9%에서 2.8%로 上昇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關稅率이 1.4%에서

〈表 4〉 韓國의 實效保護率의 比較 單位: %

產 業 部 門	1 9 6 6			1 9 7 3		
	名目關稅率	間接稅率	實效保護率	名目關稅率	間接稅率	實 效 保 護 率
1. 織 維 絲	1.8	7.5	-31.6	1.6	3.5	-10.7
2. 織 物	2.4	0.8	-19.5	0.4	0.8	-13.9
3. 織 維 製 品	5.3	0.4	0.1	1.8	0.5	-3.6
4. 製 革 及 革 製 品	6.1	0.7	-3.0	1.6	1.4	-7.4
5. 製 材 及 合 板	10.1	1.4	26.1	0.5	1.4	-5.2
6. 木 製 品 及 家 具	1.4	0.9	-18.8	10.0	2.8	27.3
7. 紙 類 及 紙 製 品	8.0	1.8	-1.6	7.7	1.7	4.1
8. 印 刷 及 出 版	9.3	0.6	1.1	4.2	0.2	-2.5
9. 無 機 基 礎 化 學 製 品	(28.3)	2.8	53.4)	15.2	2.5	24.2
10. 有 機 基 礎 化 學 製 品				11.0	3.3	0.8
11. 化 學 肥 料	0.0	0.5	-13.3	0.3	-0.1	-16.6
12. 其 他 化 學 製 品	20.1	3.9	9.7	10.2	1.6	6.1
13. 石 油 製 品	9.4	25.9	9.6	13.0	19.9	84.5
14. 石 炭 製 品	12.7	0.6	15.7	7.1	0.5	29.5
15. 玄 孚 製 品	6.4	0.6	-14.7	19.0	0.5	117.8
16. 非 金 屬 礦 物 製 品	5.4	2.7	-9.5	16.3	0.2	29.4
17. 銑 鐵 及 粗 鋼	9.0	0.6	10.7	2.0	0.5	-2.8
18. 鐵 鋼 1 次 製 品	9.8	0.6	-15.4	5.5	0.8	8.6
19. 非 金 屬 地 金 及 同 1 次 製 品	12.5	1.5	14.5	7.9	1.8	10.3
20. 金 屬 2 次 製 品	7.6	0.6	-6.5	11.2	0.6	24.9
21. 一 般 機 械	4.0	0.7	-7.6	3.8	2.9	-4.1
22. 電 氣 機 械	12.4	2.1	7.8	3.6	3.4	-6.0
23. 輸 送 用 機 械	5.8	1.8	-7.1	5.3	4.8	-2.4
24. 精 密 機 械 及 光 學 機 具	—	—	—	12.8	1.2	17.0
25. 其 他 製 造 業	18.3	1.2	18.7	2.7	1.1	-5.4

註: 1. 1966年은 韓國貿易研究所, 『現行關稅率에 관한 研究』에 의함.

2. 1973年은 本稿에서의 計測

10.0%로上昇하였기 때문에 實效保護率이 66年의 -18.8%에서 27.3%로上昇하여 많은 保護를 받게 되었다. 이는 또한 이 部門의 重要 中間投入財인 製材 및 合板의 關稅率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0.1%에서 0.5%로 대폭 下落한 데에도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保護를 받은 關係上 이 部門의 輸出도 近年에 많이 增加되는 趨勢에 놓여 있다.

7) 無機 및 有機基礎化學製品

이 部門은 1966年에는 無機 및 有機基礎化學製品이 하나로 統合되어 基礎化學製品으로 되어 있었다. 66年의 경우 無機基礎化學製品의 實效保護率은 53.4%로 가장 높은 편이었

다. 그러나 73년의 경우 無機基礎化學製品 및 有機基礎化學製品の 實效保護率은 각기 24.2%와 0.8%로서 66년에 비해 顯著하게 줄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더불어 이 部門의 産業이 急速度로 進展하여 많은 保護를 必要치 않는 段階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具體的으로 名目關稅率이 66년의 28.3%에서 73년에는 無機 15.2%; 有機 11.0%로 下落하고 있다.

8) 化學肥料

이 部門은 實效保護率이 66년의 -13.3%에서 73년에는 -16.6%로 다시 惡化되고 있다. 現在까지는 化學肥料가 市場의 價格機構를 통해서가 아니라 政策當局의 配慮에 의하여 供給되고 있기 때문에 그 保護如何는 그다지 큰 問題가 아니지만 昨今の 國內의 肥料의 需給狀況으로 보아 海外輸出이 不可避한 現實인 만큼 이 部門의 지나친 「마이너스」의 實效保護率은 바람직하지 않다.

9) 石油製品

이 部門은 73년의 경우 間接稅率이 比較的 높은 19.9%임에도 불구하고 實效保護率이 무려 84.5%에 달하는 高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部門에 대한 關稅率이 13.0%로 他部門에 비하여 比較的 높은데다가 이 部門의 中間投入財의 75%程度를 점하고 있는 非金屬鑛石, 즉 土砂石, 原鹽, 窯業原料鑛物, 黑鉛, 滑石 등의 關稅率이 1.9%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石油製品은 最終需要보다 中間需要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73年水準보다 상당히 低下되어도 무방하다고 判斷된다. 따라서 이 部門에 대한 名目關稅率을 낮추든가 非金屬鑛物의 關稅率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고무 製品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14.7%에서 73년에는 117.8%로 아주 놀라운 程度로 上昇하였다. 이는 關稅率이 63년의 6.4%에서 19.0%로 대폭 引上된데에도 그 原因이 있지만 이 部門의 投入財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材産物의 關稅率이 2.1%의 낮은 水準에 있으며 또한 投入財로서의 織物 및 無機化學製品의 關稅率이 각기 2.4%와 28.3%에서 73년에 0.4%와 15.2%로 下落하였기 때문이다. 여하간에 이 部門은 66년에 -14.7%의 實效保護率을 示顯함으로써 將來의 輸出增進을 위하여 보다 많은 保護가 要求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많은 保護率을 보여주고 있어 輸出意慾을 助長시키는데 貢獻하는 바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部門의 最終需要와 中間需要의 比가 약 1:1이라는 점을 勘案하면 이와 같이 높은 保護率은 이를 中間財로 使用하는 他産業部門의 實效保護率을 낮추는 波及效果를 가

지는 가답에 너무 지나친 保護는 바람직하지 않다.

11) 非金屬鑛物製品

이 部門은 66年度 產業聯關表에서는 유리土石製品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해의 實效保護率은 -9.5%로 되어 있다. 이 部門의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멘트이며 國際競爭力이 比較的 높은 部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輸出을 위해서도 適當한 保護가 必要하다는 것을 66年度の 分析이 指摘하고 있다. 그런데 73년에는 關稅率이 5.4%에서 16.3%로 上昇되었고 그 결과 實效保護率도 -9.5%에서 29.4%를 上昇되었다. 이와 같은 保護를 前提로 앞으로의 輸出에 있어 有利한 基盤을 다져야겠다.

12) 銑鐵 및 製鋼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10.7%에서 -2.8%로 下落하였다. 이 部門은 中間投入財로서 自體部門, 즉 鐵銑鐵 및 製鋼을 약 65%程度 所要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中間財로서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銑鐵 및 製鋼의 關稅率이 66年の 9.0%에서 73年の 2.0%로 下落하였기 때문에 實效保護率이 많이 下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部分은 태반이 他部門生産을 위한 中間投入財로 使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낮아진 保護率은 他部門의 保護率을 높이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13) 鐵鋼 1次製品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66년에는 -15.4%이었으나 73년에는 8.6%로 되었다. 이는 關稅率이 9.8%에서 5.5%로 下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部門生産의 中間投入財의 大宗을 이루는 銑鐵 및 粗鋼의 保護率이 名目關稅率에 있어 9.0%로부터 2.0%로, 實效保護率에 있어 10.7%로부터 -2.8%로 下落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鐵鋼 1次製品이 그 自體生産을 위한 投入財로서 또한 많이 所要되고 있기 때문에 이 部門의 關稅率의 引下(9.8% → 5.5%)도 保護率을 높이는데 寄與한 바 크다. 그러나 이 部門은 金屬製品, 一般機械, 電氣機械, 輸送用機械 등의 重工業과 建築 및 土木事業 등에 中間投入財로서 대단히 많이 使用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保護는 바람직하지 않다.

14) 金屬製品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6.5%에서 24.9%로 대폭 上昇되었다. 이는 關稅率이 7.6%에서 11.2%로 上昇된데다가 中間投入財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鐵鋼 1次製品의 關稅率이 66年の 9.8%에서 73年の 5.5%로 下落한 事實에 그 主要原因이 있다 하겠다. 이 部門은 金屬家具, 家庭用金屬製品도 包含하고 있는 가답에 어느 程度의 保護는 輸出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部門에 包含되어 있는 建設用 金屬製品의 경우는 그 波及效果를 생각할 때 지나

친 保護는 建設部門의 保護를 弱화시킴을 잊지말아야 한다.

15) 一般機械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66년에 -7.6%이었는데 73년에도 -4.1%로 되어있어 保護를 받지못하고 있다. 이는 이 部門의 關稅率이 3.8%임에 반하여 投入部門에서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는 鐵鋼 1次製品의 關稅率이 5.5%나 되기 때문이다. 이 部門에 속하는 153基本部門의 實效保護率을 별도로 提示하면 <表 5>에서 볼 수 있듯이 機械一般部分品을 除去하고는 전부 「마이너스」의 實效保護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 部門에 대한 앞으로의 重點育成을 위하여 적어도 實效保護率이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야겠다.

<表 5> 一般機械部門의 實效保護率(1973) 單位 : %

56 統 合 部 門				153 基 本 部 門					
產 業	稅 率	名 目 關稅率	間接稅率	實 效 保 護 率	產 業	稅 率	名 目 關稅率	間接稅率	實 效 保 護 率
37. 一 般 機 械		3.8	2.9	-4.1	原 動 機 及 보 일 러		2.0	0.5	7.9
					工 作 加 工 機 械		6.9	0.5	-9.6
					特 殊 產 業 機 械		3.4	0.7	-9.1
					事 務 及 서 어 비 스 用 機 械		3.9	0.5	-10.3
					一 般 產 業 機 械 及 裝 置		3.3	0.5	-9.5
					家 庭 用 機 械		8.8	20.7	-0.5
					機 械 一 般 部 分 品		23.7	0.5	96.8

16) 電氣機械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66년의 7.8%에서 -6.0%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이 部門의 關稅率이 12.4%에서 3.6%로 그 引下幅이 많은데 主要原因이 있다. 153基本部門에 속하는 것으로 發電機, 變壓機 등의 產業用 電氣機具 및 家庭用 電氣機器는 약간의 保護를 받고 있으나 電子 및 通信機器는 「마이너스」의 實效保護率을 보여주고 있다. 重工業의 育成이라는 見地에서 역시 充分한 配慮가 있어야겠다.

17) 輸送用機械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66년의 -7.1%에서 73년의 -2.4%로 약간의 好轉되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의 實效保護率을 나타내고 있다. 153基本部門으로 보면 造船 및 船舶修理, 自動車 및 部分品은 陽의 實效保護率이나 鐵道車輛, 自動車修理, 기타의 輸送用機械는 負의 實效保護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 部門도 重工業으로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점을 勘案하여 어느 程度의 保護를 받아야 한다.

18) 精密機械 및 光學機具

이 部門에 대하여는 66年度の 計測結果가 없기 때문에 66年度와의 比較는 不可能하다. 73年の 경우 名目關稅率이 12.8%, 實效保護率이 17.0%로 되어있어 상당한 保護를 받고 있다. 이는 投入部門에서 比較的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鐵鋼 1次製品과 非鐵金屬他金 및 동 1次製品의 關稅率이 각기 5.5%와 7.9%로서 最終財로서의 精密機械 및 光學機具의 關稅率 12.8%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 部門에 속하는 것으로는 醫療用 機械器具, 精密計測 機器, 光學機械렌즈 및 時計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工業水準으로 미루어보아 이 程度의 保護는 妥當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 우리나라의 實效保護率에 대하여 66年과 73年の 計測結果를 意義있다고 생각되는 部門에 대하여 比較 檢討해보았는데 留意할만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事實을 들 수 있다.

① 纖維絲, 織物 및 纖維製品의 實效保護率이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전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이 部門은 1960年代 이후 많이 成長하였고 輸出產業으로서도 상당한 進出을 보였던 것인 만큼 現段階로서는 保護가 不必要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部門의 實效保護率은 적어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야겠다. 우리나라의 輸出이 점차로 重工業部門에 置重해감을 目標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輕工業部門의 輸出額數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纖維製品이 絕對的으로 큰 役割을 하고 있다. 1977年度の 輸出目標 100億弗중 輕工業製品이 약 55億弗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纖維類의 輸出額數는 약 32億弗이나 된다.

따라서 이 部門은 앞으로도 繼續 比較優位를 갖고 國際市場에 進出하여야 할 部門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保護를 받을 必要는 없지만 輸出意慾을 低下시키지 않도록 適切한 保護는 가해져야 한다.

② 無機 및 有機基礎化學製品의 實效保護率이 1966年の 53.4%에 비하여 1973년에는 半以下로 떨어져 無機가 24.2%, 有機가 0.8%로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으로 이 部門의 產業이 國際競爭力을 가질 수 있도록 成長해 왔고 따라서 별한 큰 保護를 가하지 않아도 無妨하게 되었다는 結果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③ 石油製品의 實效保護率이 84.5%로 대단히 높은 바 이 部門이 投入財로 많이 使用되는 점을 고려할 때 過다한 實效保護率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輸出產業으로 有望視되고 있었던 고무製品의 實效保護率이 66年の -14.7%에서 일약 117.8%로 대폭 上昇하여 이 部門의 生産業者에게 有利한 基盤을 附與하게 된 것은 多幸한 일이다. 그러나 앞서에서도 指摘하였듯이 이 部門의 最終需要計와 中間需要計의 比가 약

1:1이라는 점을 勘案할 때 이와 같이 과다한 保護는 이를 中間財로 使用하는 他産業部門의 實效保護率을 낮추는 結果가 됨을 아울러 考慮하여야 한다.

⑤ 銑鐵 및 製鋼의 保護率이 關稅率引下로 10.7%에서 -2.8%로 떨어진 것은 이 部門이 他部門生産을 위한 中間投入財로 많이 使用되는 까닭에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部門도 輸出戰線에서 活躍하여야 할 것인 만큼 너무 낮은 保護率은 좋지 않으며 적어도 實效保護率이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것이 所望스럽다.

⑥ 重工業部門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出發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輸出은 중건의 輕工業爲主에서 벗어나 점차로 重工業部門에 置重하도록 計劃되어 있으며 第1次年度인 1977년에는 輸出目標 100億弗중 重工業部門이 약 36億弗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重工業部門의 實效保護率은 73年の 경우 鐵鋼 1次製品, 非金屬地金 및 同 1次製品, 金屬製品만이 陽의 數値를 나타내고 있고 殘餘 重工業部門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이 部門이 國際市場에서 충분한 競爭力을 가질 수 있을 때 까지 이 部門에 대한 保護에 대하여 相當한 配慮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負의 實效保護率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輸出金融, 關稅의 減免 등의 惠澤과 아울러 實效保護率상의 保護에 대하여 보다 長期的인 觀點에서 講究되어야 하겠다.

5. 實效保護率의 國際比較

世界各國은 貿易構造, 生産構造가 相異하며 産業聯關表上的 投入係數도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實效保護率의 計測結果를 國際的으로 比較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더욱이 同一한 年代도 아니고 相異한 年代의 것을 國際比較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同一한 國家라 할지라도 經濟의 發展으로 인하여 生産構造 및 貿易構造도 必然的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달라진 條件下에서의 實效保護率은 그것이 設령 同一한 國家의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니는 內容을 달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國家를 달리하고 다시 年代를 달리하면 그 國際比較는 더욱 많은 問題點을 隨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情을 일단 考慮에 넣고 制限된 資料를 基礎로 몇가지 점에 대하여 國際的으로 比較해보기로 한다.

1) 保護의 産業間構造

世界各國의 國內의 工業을 保護할 目的으로 一般的으로 未加工의 原料에 대하여 關稅率을 극히 적게 하고 製品의 加工段階가 높아짐에 따라 關稅率을 높이는 政策을 취하고 있다.

이를 開發途上國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表6>에서 볼 수 있듯이 말레이시아와 노르웨이를 除外하면 關稅의 保護는 製造業에 有利하고 第1次産業에 不利하다. 第1次産

〈表 6〉 開發途上國의 名目 및 實效保護率 單位：%

產 業 部 門	브 라 질 (1966)		칠 레 (1961)		멕 시 코 (1960)		말 레 이 지 아 (1965)	
	名 目 關稅率	實 效 保護率	名 目 關稅率	實 效 保護率	名 目 關稅率	實 效 保護率	名 目 關稅率	實 效 保護率
I. 農 林 水 產	63	53	42	49	7	3	2	0
II. 鑛業 및 에너지	27	25	8	-2	4	-5	-14	-17
第 1 次 產 業 (合計)	59	52	28	21	6	1	-2	-6
III. 加 工 食 品	82	87	82	2,884	18	6	2	0
IV. 建 築	79	86	66	64	-4	1	5	-2
V. 機 械 類	87	100	92	98	29	38	0	-6
VI. 生 產 財	46	55	85	114	23	78	2	-7
VII. 消 費 財	124	162	144	189	37	61	13	31
製 造 業 (合計)	96	113	111	182	24	26	2	-6

產 業 部 門	파 키 스 탄 (1963-1964)		필 리 핀 (1965)		노 르 웨 이 (1954)		韓 國 (1973)	
	名 目 關稅率	實 效 保護率	名 目 關稅率	實 效 保護率	名 目 關稅率	實 效 保護率	名 目 關稅率	實 效 保護率
I. 農 林 水 產	7	-10	8	0	15	16	4	4
II. 鑛業 및 에너지	—	—	3	-25	0	0	1	-5
第 1 次 產 業 (合計)	—	—	7	-1	14	-15	3	2
III. 加 工 食 品	133	-307	15	46	11	6	13	69
IV. 建 築	54	51	25	50	5	6	7	10
V. 機 械 類	86	139	27	103	12	18	6	1
VI. 生 產 財	49	128	23	50	4	5	11	14
VII. 消 費 財	167	-1,017	45	557	18	27	21	54
製 造 業 (合計)	85	271	25	61	8	8	12	29

資料：Balassa, B.,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971. 단 韓國은 本稿에서 的 計測

業과 製造業의 平均名目關稅率은 브라질의 경우 59%와 96%, 칠레가 28%와 111%, 멕시코가 6%와 24%, 파키스탄이 7%와 85%, 필리핀이 7%와 25%, 그리고 韓國의 경우는 3%와 12%로 되어 있다.

名目關稅率이 第1次產業에서 낮고 製造業에서 높은 까닭에 實效保護率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심해진다. 즉 브라질에 있어서는 52%와 113%, 칠레의 경우 21%와 182%, 멕시코가 1%와 26%, 파키스탄이 -10%와 271%, 필리핀이 -1%와 61% 그리고 韓國이 2%와 29%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兩者의 差異는 韓國과 멕시코에서 比較的 적고 브라질과 필리핀이 크며, 파키스탄과 칠레의 경우 제일 顯著하다.⁽²³⁾

말레이시아와 노르웨이의 경우 鑛業과 에너지產業이 差別待遇를 받고 있으며 農業部門은

(23) Balassa, B. and Associates,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and London, 1971, p.58.

오히려 保護度가 강한 傾向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農業部門의 實效保護率은 零이나 製造業部門은 -6%이며 또한 鑛業과 에너지産業에서는 -17%이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각기 16%, 8% 및 0%이다. 이러한 結果는 前記國家에서 製造業에는 自由貿易政策을, 農業에는 一種의 保護政策을 實施한 까닭이다. 그렇기는 하나 이와 같은 政策을 實施하는 兩國家의 事情은 약간 다르다. 노르웨이는 經濟가 比較的 發達된 國家이기 때문에 製造業部門에서 自由貿易政策을 實施함으로써 여타 國家와의 國際競爭이 可能하다고 보았고 農業部門에서는 所得分配과 國防의 見地에서 그 保護가 必要하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輸入代替産業을 통하여 産業化를 試圖하였고 農業部門에서는 保護를 통하여 自給自足を 기하고 있다.

製造業部門 內部에서의 保護의 樣相을 보면 興味있는 일이 많다. 편의상 加工食品을 製造業部門에서 除外하고 관찰하면 中間財로 부터 最終財에 이룰수록 保護率은 높아지고 있다. 建築資材의 保護率이 가장 낮으며 生産財, 消費財 順으로 保護率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이리하여 一般的으로 第1次産業보다 製造業이 많은 保護를 받고 있으며 製造業部門에서도 中間生産財보다 最終消費財가 더욱 많은 保護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國內의 工業을 保護할 目的으로 一般的으로 未加工의 原料에 대하여는 關稅率을 극히 적게 하고, 製品의 加工段階가 높아질에 따라 關稅率을 높이는 政策을 취하고 있다. 이를 傾斜關稅(tariff escalation, escalation of tariff), 또는 遞增關稅라 하는데 이러한 政策은 先進國, 開發途上國을 不問하고 많은 國家에서 採擇하고 있다. 이를 韓國과 日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다 具體的으로 把握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日本의 경우 1963년과 1968년의 産業聯關表를 利用하여 名目關稅率 및 實效保護率을 計算한 結果에 의하면, 1963년의 경우⁽²⁴⁾ 原料(名目 3.1%, 實效 0.8%), 生産財(名目

<表 7>

韓國과 日本의 保護率

單位 : %

國別 稅率 品目	日 本				韓 國 (1973)	
	1 9 6 3		1 9 6 8		名目關稅率	實效保護率
	名目關稅率	實效保護率	名目關稅率	實效保護率		
原 料	3.1	0.8	3.93	0.93	3.99	4.12
生 產 財	13.7	29.6	15.52	22.43	10.54	13.91
消 費 財	21.6	44.6	23.61	35.80	20.54	54.22

資料 : 日本大藏省, 『關稅調查月報』, 1970年 3月號 및 71年 4月號. 단 韓國은 本稿에서의 計算.

(24) 渡部福太郎, 「關稅引下げ効果の分析」, 『關稅調查月報』, 第22卷 第3號, 1970年 3月, p.61.

13.7%, 實效 29.6%), 消費財(名目 21.6%, 實效 44.6%), 1968年の 경우⁽²⁵⁾ 原料(名目 3.9%, 實效 0.9%), 生産財(名目 15.5%, 實效 22.4%), 消費財(名目 23.6%, 實效 35.8%) 順으로 製品의 加工度가 높아짐에 따라 名目關稅率 및 實效保護率이 같이 높아지고 있다. 韓國의 경우도 1973年度 産業聯關表에 의한 計算結果에 의하면 原料(名目 4.0%, 實效 4.1%), 生産財(名目 10.5%, 實效 13.9%), 消費財(名目 20.5%, 實效 54.2%) 順으로 加工段階가 높아짐에 따라 名目關稅率 및 實效保護率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先進諸國의 경우도 이와 같은 傾向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表 8>에서 볼 수 있듯이 美國, 英國, EEC諸國 및 스웨덴 등 여러 國家의 경우 生産財보다 消費財가 名目關稅率 및 實效保護率이 다 같이 높으며 같은 生産財의 경우도 中間財에 가까운 것보다 完成財에 가까운 것, 즉 같은 生産財 중에서도 加工度가 높은 것이 關稅率이 높아지고 있어 傾斜關稅의 現象을 明白히 보여주고 있다.⁽²⁶⁾

<表 8> 先進諸國의 保護率 單位: %

品目	國別	美 國		英 國		EEC		스웨덴		日 本	
		名目關稅率	實效保護率	名目關稅率	實效保護率	名目關稅率	實效保護率	名目關稅率	實效保護率	名目關稅率	實效保護率
生 産 財											
中間財에 가까운것		8.8	17.6	11.1	23.1	7.6	12.0	3.0	5.3	11.4	23.8
完成財에 가까운것		15.2	28.6	17.2	34.3	13.3	28.3	8.5	20.8	16.6	34.5
消 費 財		17.5	25.9	23.8	40.4	17.8	30.9	12.4	23.9	27.5	50.5

資料: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3, Dec. 1965).

다음은 名目關稅率과 實效保護率의 單純平均을 比較해 보기로 하자. 물론 이 경우도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名目關稅率과 實效保護率의 算出方式이 다르고 또한 算出年代가 다르니만큼 그 比較의 意義는 그만큼 減少된다는 事實을 前提로 한다. 實效保護率의 平均이 名目關稅率의 平均보다 높은 國家에서는 平均적으로 볼 때 最終生産物에 대한 關稅의 높이가 中間投入財에 대한 關稅 및 間接稅의 賦課로 인한 價格引上幅보다 크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해당 産業의 附加價値를 保護할 수 있도록 關稅 및 間接稅構造가 되어 있다 할 수 있으며 實效保護率의 平均이 名目關稅率의 平均보다 낮은 國家에서는 그 反對의 경우로 인하여 産業이 附加價値가 保護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判斷된다.⁽²⁷⁾

(25) 中山恭子, 「わが國における實効保護率の試算」, 『關稅調査月報』, 第23卷 第4號, 1971年 4月, p. 21.

(26) Balassa, B., "Tariff Protection in Industrial Countries: An Evalu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3, Dec. 1965, p. 591.

(27) Grubel, H.G. and Johnson, H.G., "Nominal Tariffs, Indirect Taxes and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The Common Market Countries 1959," *Economic Journal*, Vol. 77, Dec. 1967, p. 765.

先進國의 경우는 例外없이 實效保護率의 平均이 名目關稅率의 平均보다 높아 그 나라의 關稅 및 間接稅構造가 그 自體만으로 最終生産物의 附加價値를 保護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兩者의 差도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實效保護率의 平均이 名目關稅率의 平均보다 크고 그 差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最終生産物에 대한 保護의 度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表 9〉 主要國의 名目關稅率과 實效保護率(單純平均) 單位：%

區分	國別									
	美國 (1962)	英國 (1962)	EEC (1962)	스웨덴 (1966)	日本 (1965)	브라질 (1965)	말레이시아 (1966)	필리핀 (1973)	韓國 (1966) (1973)	
名目關稅率	12.5	11.2	12.2	8.3	17.8	79.0	18.0	18.0	9.0	6.0
實效保護率	22.4	29.5	20.2	16.8	32.5	84.5	-3.5	39.0	0.8	7.4

資料：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3, Dec. 1965.

Balassa, B.,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971.

韓國貿易研究所, 『現行關稅率에 관한 研究』, 1969.

단 1973年(韓國)은 本稿에서의 計算

〈表 9〉에서 볼 수 있듯이 英國과 日本의 名目關稅率과 實效保護率의 平均은 각기 11.2%와 29.5% 및 17.8%와 32.5%로 되어 있어 兩者의 隔差는 18.3%와 14.7%의 高率을 보여 주고 있다. 開發途上國家인 브라질과 필리핀도 實效保護率이 名目關稅率보다 높으나 말레이시아는 實效保護率의 平均이 -3.5%로 되어 있어 18.0%의 名目關稅率의 平均보다 낮은 물론 그 差도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에는 實效保護率의 平均이 名目關稅率의 平均보다 낮았으나 1973년에는 實效保護率이 名目關稅率을 약간 上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關稅 및 間接稅構造가 66년에 비해 73년에 이르러 그 自體만으로도 平均적으로 볼 때 最終生産物의 附加價値를 保護할 수 있는 方向으로 轉換해왔음을 示唆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에는 調査對象 21個部門중 12個部門이 負의 實效保護率이며 1973년에는 41個部門중 17個部門이 역시 負의 實效保護率을 나타내고 있다. 先進國의 경우 35個部門중 負의 實效保護率을 가지는 部門이 스웨덴이 3個部門, 美國이 2個部門, 英國과 日本이 각기 1個部門에 지나지 않는 점과 比較하면 우리나라의 實效保護率의 平均이 1973년에 비록 名目關稅率의 平均보다 上廻하고 있다고는 하나 保護面에서의 關稅 및 間接稅構造는 상당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더우기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重工業 部門의 많은 部門이 負의 實效保護率을 보여주고 있다는 事實에 대하여는 더 많은 政策上의 配慮가 있어야 하겠다.

한편 名目關稅率과 實效保護率의 相關係數를 보면 一般적으로 先進國이 開發途上國에 비

해 그 相關度가 낮다. 이에 대하여는 實效保護率의 算出方法, 算出年度 및 算出對象品目の 數 등이 相異하기 때문에 그 理由를 斷定的으로 指摘할 수 없으나 先進國의 經濟構造와 關稅構造가 開發途上國에 비해 複雜하기 때문에 名目關稅率이 實效保護率에 주는 影響이 開發途上國에 비해 減少되는 데에 그 原因의 一端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表10〉 名目關稅率과 實效保護率의 相關係數

美國 (1962)	英國 (1962)	EEC (1962)	스웨덴 (1962)	日本 (1962)	브라질 (1967)	말레이시아 (1965)	필리핀 (1965)	韓國	
								(1966)	(1973)
0.61	0.56	0.81	0.78	0.72	0.96	0.87	0.82	0.86	0.81

資料: *Economic Journal*, Vol. 77, Dec. 1967.

Balassa, B.,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971.

단 韓國은 本稿에서의 試算

이상 實效保護率을 國內 및 國際적으로 比較하고 그 內容을 檢討해보았는데 實效保護率의 概念에서도 言及하였듯이 實效保護率의 算出에 있어서는 國際貿易論에서 適用되는 一般的 假定, 예컨대 完全競爭, 生産要素는 國際적으로 移動하지 않는다, 그리고 貿易의 障礙는 存在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체의 非關稅壁은 存在하지 않는다, 輸送費의 存在는 無視할 수 있다 등의 假定外에 投入係數는 일정하다, 最終財 및 投入財의 外國의 供給彈力性은 無限大이기 때문에 그 國際價格은 변하지 않는다, 非貿易財는 存在하지 않는다 등의 여러 假定이 前提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假定은 극히 非現實의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非現實의인 事實을 前提로 한 實效保護率의 算出結果는 그만큼 여러 면에서의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므로 實效保護率의 政策的 應用이나 比較에 있어서는 慎重에 또 慎重을 기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強調해 둔다.

參 考 文 獻

- [1] Balassa, B., "Tariff Protection in Industrial Countries: An Evalu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3, Dec. 1965, pp. 573-94.
- [2] Balassa, B. and Associates,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and London, 1971, p. 58.
- [3] Barber, C.L., "Canadian Tariff Polic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 21, Nov. 1955, pp. 513-30.
- [4] Basevi, G., "The United States Tariff Structure: Estimates of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of United States Industries and Industrial Labo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8, May 1966, pp. 147-60.

- [5] Corden, W.M., "The Structure of a Tariff System and the Effective Protective Ra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4, Jun. 1966, pp. 221-37.
- [6] Corden, W.M., *The Theory of Protec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71, pp. 35-7.
- [7] Grubel, H.G. and Johnson, H.G., "Nominal Tariffs, Indirect Taxes and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The Common Market Countries 1959," *Economic Journal*, Vol. 77, Dec. 1967, pp. 761-76.
- [8] Grubel, H.G. and Johnson, H.G., eds., *Effective Tariff Protection*, GATT, Geneva, 1971, pp. 1-15, pp. 269-80.
- [9] Grubel, H.G., Johnson, H.G. and Rapp, W.V., "Excise Taxes and Effective Protection: A Note," *Economic Journal*, Vol. 79, Sep. 1969, pp. 674-75.
- [10] Harberler, W.,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 Hodge & Co., London, 1936, pp. 235-6.
- [11] Johnson, H.G., "The Theory of Tariff Struc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World Trade and Development," in Johnson, H.G. and Kenen, P.B., *Trade and Development*, Geneva, 1965.
- [12] Johnson, H.G., *Aspects of the Theory of Tariffs*,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71, pp. 337-40.
- [13] Korean Development Association, *Effective Protective Rate of Korean Industries*, 1967, pp. 11-27.
- [14] Leith, J.C., "Substitution and Supply Elasticities in Calculating the Effective Protective Rat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2, Nov. 1968, pp. 588-601, and "Reply," Vol. 84, Feb. 1970, pp. 158-60.
- [15] Macario, S., "Protectionism and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Economic Bulletin for Latin America*, Vol. 9, Mar. 1964, pp. 61-101.
- [16] Meade, J.E., *Trade and Welfare*,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55, p. 157, pp. 162-3.
- [17] Sampson, G.P., "Effective Protection the Substitution Problem; The Australian Case," *Economic Record*, Vol. 51, Jun. 1975, pp. 249-52.
- [18] Schufft, R. and Reid, J.B., "Diagrammatic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Effective Protection," *Economic Record*, Vol. 48, Sep. 1972, pp. 433-36.
- [19] Taussig, F.W., *The Tariff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Capricorn Books, New York, 8th ed., 1964, p. 75.
- [20] Vernon, J., et al., *Report of the Committee of Economic Enquiry*,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1965, Chapter 13 and Appendix L.
- [21] Yeats, A.J.,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Production Process Changes on Effective Protection Estim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8, Feb. 1976, pp. 81-5.
- [22] 高木量, 「日本と韓國の關稅體系の比較」, 『アジア經濟』, 第3卷 第11號, 1967年 11月, pp. 15-26.
- [23] 山本繁綽, 『貿易政策の理論』, 東洋經濟新報社, 1974, pp. 232-35.
- [24] 渡部福太郎, 「關稅引下げ効果の分析」, 『關稅調查月報』, 第22卷 第3號, 1970年 3月, pp. 56-67.
- [25] 韓國貿易研究所, 『現行關稅率の關稅研究』, 1969, pp. 63-97.
- [26] 中山恭子, 「わが國における有効保護率の試算」, 『關稅調查月報』, 第23卷 第4號, 1971年 4月, pp. 19-23.